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47

제출년월일 : 2024. 11. 11.
발 의 자 : 박은경, 한명훈, 설호영, 유재수 선현우, 김진숙 의원(6인)

1. 제안이유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와 주민 참여를 통해 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비용추계서

6. 부서검토의견 : 붙임 4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5-01-03 19:05:48 - ***.*.***.35

【붙임 1】 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체위·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로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3. "주민참여형"이란 시장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조성·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운영 계획)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이하 "조성·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조성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5-01-03 19:05:48 - ***.*.***.35

5.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6. 어린이공원 등의 운영·관리 계획
7. 그 밖에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 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2.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3.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등의 설계·디자인
3.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5-01-03 19:05:48 - ***.*.***.35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8)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5-01-03 19:05:48 - ***.*.***.35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647

제안년월일 : 2024년 12월 4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수정이유

○ 조례안에서 혼용되어 사용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의 약칭을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안 입안기준에 따라 입법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을 정비하여 수정함.

□ 주요골자

○ 조례안의 주요 단어인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약칭을 일부 미비한 자구와 함께 "어린이공원 등" 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 으로 일괄 수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5-01-03 19:14:47 - ***.*.***.35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를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린이공원 등"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조성 · 운영"을 "조성 · 운영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어린이공원 등"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으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방향)"을 "(조성 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공원 등"을 각각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공원 등"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린이공원의"를 "어린이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어린이공원 등"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어린이공원 등"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으로 한다.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5-01-03 19:14:47 - ***.*.***.35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조성·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 ②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
제5조(조성·운영 계획)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이하 "조성·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어린이공원 등의 운영·관리 계획 7. (생 략)	**제5조(조성·운영 계획)** ① ------- 조성·운영 계획----------. ② ----------. 1. ~ 5. (제정안과 같음) 6.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 7. (제정안과 같음)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제6조(조성 방향)** ① ----------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5-01-03 19:14:47 - ***.*.***.35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 ----------.
②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 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등의 설계·디자인	2. -------- 어린이공원 --------
3. (생 략)	3. (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 ----------
②·③ (생 략)	②·③ (제정안과 같음)
제8조(위탁)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5-01-03 19:14:47 - ***.*.***.35